

2013년도 산학협력단 제9차 운영위원회 회의록

일 시: 2013년 12월 12일(목) 오후 3시

장 소: 산학협력단 회의실 1층

참석위원: 편용국 위원장, 안영일 위원, 서동엽 위원, 이흥기 위원
송태섭 위원, 홍성배 위원, 장영중 위원

위원장이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에 대해 개회를 선언함

1.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예산결산 자문 및 심의 기능 규정 신설(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일부개정안)

가. 교육과학기술고시 제2012-5호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의거,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기능을 갖는 것은 교육부 규칙에 상충되는 것으로 개정안의 수정을 요한다는 의견

나. 서울시립대학교, 전남도립대학교, 아주대학교의 유사 사례와 및 교육부 질의 응답서를 미루어 볼 때,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기능을 갖는 것은 교육부 규칙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의견

다. 이미 운영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견

라. 교육부 규칙에 총장이 심의함에 있어 별도의 심의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맡음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

마. 참석위원 7명중 찬성 6명과 반대 1명의 심의의견으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에 의거, 원안가결함

2. 단장의 임명으로 산학협력단에 외부전문가 감사 1인을 두어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감사 시행 등 감사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규정 개정(감사규정 일부개정안)

- 가. 이미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13조와 산학협력단 감사규정의 내용이 중복되어 있다는 의견
- 나. 외부전문가로 감사인을 지정하여 산학협력단 재정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근본 취지는 공감하나, 외부전문가 감사 수행에 따른 비용 문제와 복식부기 및 단식부기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
- 다. 감사규정의 개정과 관련 보다 심사숙고하여 개정안을 재상정함이 적절하다는 의견
- 라. 참석위원 7명중 찬성 1명과 반대 6명의 심의의견으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에 의거, 부결함.

3. 2013년도 3차 추가경정 현금예산 수정(안)에 대한 자문 및 심의

- 가. 추가경정 현금예산 총괄내역 및 단위사업별 세부내역 설명
- 나. 자금예산서에서 현금예산서로의 개선사항 설명
- 다. 동일 관내 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세부사업 설명
- 라. 본 안에 대한 의결은 예산안에 대한 자문 및 검토 행위이며 심의·확정은 총장에게 있다는 의견
- 마. 참석위원 7명중 찬성 7명(조건부 1명) 심의의견으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에 의거, 원안가결함.

4. 2014년도 현금예산 수정(안)에 대한 자문 및 심의

- 가. 2014년도 현금예산 총괄내역 및 단위사업별 세부내역 설명
- 나. 주요 세부사업 설명
- 다. 본 안에 대한 의결은 예산안에 대한 자문 및 검토 행위이며 심의·확정은 총장에게 있다는 의견
- 라. 참석위원 7명중 찬성 7명(조건부 1명) 심의의견으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에 의거, 원안가결함.

위원장이 운영위원회 폐회를 선언함.

작성자 : (간사) 산학관리팀장 김 중 우 (인)

